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31. 양순경의원 외 4인
나. 회부일자 : 2007. 8. 31.
다. 상정일자 : 2007. 9. 6.(제13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양순경 의원)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)

○ 제1조(목적)

—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를 ⇒ 제62조 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○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2007. 5. 11일 「지방자치법」 법조문 일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일치 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제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